

전자보증서 도입, 공정률 확인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자보증 관련 부패요인 제거

(한국주택금융공사, 이재상 과장, 02-2014-8514)

□ 추진 배경 및 문제점

- 주택사업자 보증*과 관련, 지난 '08년 직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징계·면직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**사업자보증은 뇌물수수 등 부패유발요인이 상당하므로**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

- * 주택사업자 :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업체
- * 사업자보증 : 주택사업자에게 보증이라는 수단을 사용해 신용을 보강함으로써 은행에서 주택건설자금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

<'주택사업자 보증'에 대한 부패 위험 분석>

F4 부패행위	
○ 부패행위 형태	증수뢰, 향응수수
F5 부패행위가 어디에서 발생하였는가?	
○ 부패행위 발생 단계	대상자 선정 및 집행단계
○ 조직 내의 부패행위에 대한 인지 및 관여정도	경영진(상급자), 동료, 상사, 감사부서 인지 못함
○ 이러한 부패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?	청탁자(건설업자), 담당팀장, 브로커 간 공모
○ 일상화된 현상, 관행부패 여부	2000년 대 중반까지 일부 관행적으로 발생
F6 부패행위가 어떻게 발생하였는가?	
○ 단순한 부주의, 실수, 고의적 비리 여부	고의적 비리 에 해당
○ 부패행위 발생의 원인	외부적 요인(외부청탁, 뇌물제공)
○ 부패방지시스템의 존재·작동 여부	임직원행동강령, 금품수수 양정기준 등 부패예방 장치는 있었으나, 내부 감사부서 발견 못함
F7 부패행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가?	
○ 일회성 여부	1년간 4회 발생
○ 조직 분위기와 연관성	조직 분위기와 특별한 연관 없음
F8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규모	
○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(손실) 규모	보증(대출) 후 미회수 금액 360억원
○ 부패행위에 대한 환수조치 여부	뇌물수수에 대한 환수 실시
F9 부패행위가 어떻게 발견되었으며, 누가 발견하였는가?	
○ 발견 경로 및 동료 상사 인지 여부	경검찰 수사로 발견되었으며 동료 상사 인지 못함
F10 부패행위에 대한 조치	
○ 부패행위 발견 이후 효과적인 대응에 걸린 시간	즉시 대응 실시
○ 부패행위를 인지 후 즉시 중단 여부	즉시 중단 실시
○ 부패행위 인지 이후 사후조치	징계 면직, 형사처벌(징역) 등

○ 부패행위에 대한 상급자등 책임자에 대한 조치	상급자 관련성 여부 조사 후 지위책임을 물어 징계조치
○ 피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	특별 감사 실시
F11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	
○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완전한 정보 보고여부	즉시 관련 정보를 보고
○ 부패행위의 공개, 직원 공유, 재발방지 교육 등	자정결의대회 등을 개최하여 전직원에게 공개하고 재발방지 교육 실시
F12 재발방지 장치	
○ 부패행위의 재발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 시행 및 지속여부	부패취약분야(사업자 보증)관련 지속적 제도개선 실시, 금품수수 양정기준 강화 내부신고자 인센티브 강화(특별승진 제도 도입 등)

- (공정률 확인 방법 간소화) 중소 건설업체들은 접대를 관행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건축 공정률 확인 등 현장실사 과정에서 식사 또는 금품 제공 의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음

→ 공정률 확인 등 현장실사* 과정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여 고객과의 접촉 기회를 감소시킬 필요

* 주택사업자보증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 분할대출금이 지급되도록 상품이 설계되어 수차례 공정률 확인이 필요

- (전자보증서 도입) 서면보증서를 건설업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있어 보증서 분실 및 위·변조의 위험이 존재

→ 서면으로 발급된 보증서를 전자문서화 하여 분실 및 위·변조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

□ 내 용

- (공정률 확인 방법 간소화) 공정률 확인 방법으로 건축법상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제출한 감리보고서를 추가

변경 전	변경 후
■사업자보증시행세칙상 공정률 확인방법 - 표준공정률 산출기준에 따른 공정률 -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한 감리보고서 (신설)	■사업자보증시행세칙 - (좌동) - (좌동) - <u>건축법상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제출한 감리보고서상의 공정률</u>

- (전자보증서 도입) 사업자보증의 주요 절차(보증승인, 통지, 분할보증 신청, 보증서 발급 등)를 서면문서*에서 전자문서**로 대체

* 건설업체가 공사에 방문하여 서면문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

** 공사가 직접 은행에 전송(건설업체와의 대면기회 차단)

변경 전	변경 후
■사업자보증규정, 신용보증약관, 사업자보증시행세칙 (신설) (추가 및 수정) (신설)	■사업자보증규정, 신용보증약관, 사업자보증시행세칙 - 전자문서의 용어정의 신설 - 전자문서로 보증신청, 보증서 발급, 교부를 하는 경우의 근거규정 신설 및 세부사항의 시행세칙 위임 - 보증서는 전자신용보증서를 포함하고 전신통지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문구 추가 및 수정 - 전자문서로 보증신청, 분할보증서 발급, 조건변경 통지 등 세부절차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신설

□ 추진실적(활동)

- 사업자보증 제도 관련 개선 내용('08년 이후)

일 시	추진 내용
'08.12.17	보증 심사와 승인 업무 분리
'09.08.06	보증신청 건설업체 대표자 입회하에 서약서 제출
'10.11.26	사업자보증 심사평가표 상 정성지표를 정량지표로 변경
'11.07.08	총보증금액 5억원 이하 신청건에 대해 체크리스트 방식의 간이심사제 도입
'11.12.30	재무관리능력 평가 시 평가 근거자료에 대한 기록·관리 추가
'12.03.23	전결권자 1인에 의한 의사결정 범위 축소 및 다자간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 범위 확대
'13.07.08	사업자보증 전자보증서 제도 도입
'13.07.08	공정률 확인절차 간소화

□ 파급효과(성과)

개선내용	공정률 확인 방법 간소화	전자보증서 도입
파급효과	- 영세 건설업체의 대면접촉 시간 최소화 및 업무처리 간소화에 따른 업무처리 시간 감축 - 공정률 확인절차 간소화로 접대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부패발생 요인 제거 가능	- 보증서 분실 및 위변조에 따른 보증 사고를 미연에 방지 - 보증서 실물관리 등에 따른 영업점의 불필요한 업무를 감축시키고 보증사업자의 영업점 방문횟수를 감소시켜 고객만족도 제고 가능

사업자보증제도의 지속적 개선에 따른 장기적 성과

- 부패유발요인이 많은 사업자보증 관련 내규를 '08년부터 매년 개정하여 **사업자보증 사고발생을 등이 감소하고 있으며 뇌물수수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**

구 분	'08년말	'11년말	'12년말	전년대비 증감률
보증지원 세대수	9,081	29,851	54,287	84.9%
사고발생액(억원)	1,023	68	0	△100.0%
사고잔액(억원)	3,357	1,319	1,059	△19.7%
사고발생율(%)	6.7	0.5	0.0	△100.0%

- 최근 3년('10~'12년) 간 **청렴도 및 반부패경쟁력 평가에서 최상위 수준 유지**

구 분	'10년	'11년	'12년
청렴도 조사	1등급	1등급	2등급
반부패경쟁력 평가	1등급	2등급	2등급

□ 기타(사업자보증 제도개선 관련 노력 및 성공요인)

- 자정결의대회, 청렴서약식, 청렴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을 통해 CEO의 강력한 윤리경영 추진 의지 표명
- '08년 사업자보증 관련 징계·면직 사례 발생 이후 매년 체계적인 부패 발생 요인 발굴 및 개선대책 마련·시행
- 해당 업무 담당직원, 감사실, 윤리경영 담당부서 등으로 구성된 '청렴협의회', '청렴추진실무위원회'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부패 발생 요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실시

□ 추진 근거

근거 종류	문서명	시행일자	문서번호
사규	「사업자보증규정」, 「신용보증약관」 및 「사고관리규정」 개정	2013.07.08	주택보증 1521-0352
사규	「사업자보증시행세칙」 및 「사업자보증 심사서 작성기준」 개정	2013.07.08	주택보증 1521-0353